

공인의 사생활 보도의 실제와 한계: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와 빌 클린턴 사례를 중심으로



글.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얼마 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보도로 언론이 떠들썩했다. 몇몇 언론은 보도방식에 대해 저널리즘적 차원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상 대부분의 언론이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문제임에도 이에 대한 사실검증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의 보도에 그쳤다. 이런 사례와 유사하게 언론보도로 인해 시끄러웠던 사건이 작년 프랑스에서도 있었다.



Privacy

프랑스 영부인의 명예훼손 침해 소송

2012년 9월 5일 프랑스 지방법원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동거인인 트리에르바일레 여사의 수영복 사진을 표지 등에 게재한 프랑스 연예정보 주간지인 VSD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 VSD가 트리에르바일레 여사의 인격권을 침해(명예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어 2000유로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원래 트리에르바일레 여사는 3만 유로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 사건이 있기 전 트리에르바일레는 그녀의 이전 남성편력과 사생활을 공개한 책을 쓴 작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VSD 측은 이 결정에 대해 비록 대통령 부부의 허락 없이 사진과 기사를 게재했으나 여름 시즌에 대통령 부부의 수영복 사진을 잡지에 게재하는 것은 연례

적으로 해오던 것으로 사르코지와 시르크 대통령 부부의 수영복 사진을 실은 적도 있어서 이 사건은 ‘공인’인 영부인 자격으로서 과잉대응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VSD 측은 또한 트리에르바일레 여사가 사진이 잡지에 실리기 이전에 이 사진이 실리면 소송을 하겠다는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트리에르바일레 여사측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얻지 않고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분명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며 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것이라 피력했다. 그런데 만일 트리에르바일레의 사생활을 미국에 있는 잡지사나 신문사가 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트리에르바일레 여사가 프랑스가 아닌 미국에서 발간되는 매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승소할 수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커플의 수영복 사진을 게재한 2012년 8월 9일자 VSD 표지(출처: politicsinside, 「Valerie Trierweiler menacerait de porter plainte contre VSD」, 2012년 8월 11일자)



사르코지 당시 프랑스 대통령과 영부인 부르니 부부의 수영복 사진을 게재한 2008년 8월 13일자 VSD 표지

있었을까?

정답은 승소 가능성 '없음'이다. 왜냐하면 트리에르바일레 여사는 '공인'(public figure)이기 때문이다. 트리에르바일레 여사가 현직에 몸담고 있는 언론사의 기자이기도 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 영부인으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녀는 '공인 중의 공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공인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특히 트리에르바일레 여사와 같은 공인 중의 공인은 승소 가능성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공인 사생활 보도

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가? 프랑스에서는 공인의 사생활은 보도하면 안 되는 것인가? 미국의 경우에는 공인의 경우 보도에 있어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해도 면책되는가?

우선 미국은 언론이 공인을 상대로 가장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는 국가이다. 이는 1998년에 있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스캔들 보도 사건에 있어서도 잘 알 수 있다. 르윈스키 스캔들이라고도 하는 이 사건에서 모든 언론은 스캔들 사건을 일제히 소상하게 보도했고, 이러한 보도로 인해 클린턴 전 대통령은 한 때 탄핵의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특히 의회에 보고된 보고서에 담긴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적절한 성생활 내용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클린턴 전 대통령의 스캔들은 많은 풍자의 대상이 되기도 하면서 개인의 사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

당시 언론의 스캔들 보도가 때로는 사

실검증이 없는 선정적이고 폭로주의적 보도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클린턴 전 대통령이 어떠한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을 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기도 했겠으나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었던 이유가 더 컸다.

당시 현직 대통령인 빌 클린턴은 공인으로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언론의 보도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에 입각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다. 1964년 소위 설리반 사건(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에서 미 연방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스캔들을 보도한 1998년 2월 2일자 타임지 표지(출처 : 타임지 홈페이지[content.time.com])

PRIVACY

대법원이 수립한 ‘현실적 악의’(또는 실제적 악의) 원칙이란 ‘문제된 언론 보도를 보도할 때 기자나 편집 책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거나 진실여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설리반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에 근거하여 언론에 숨 쉴 공간을 제공하고 공직자(public official)에 대해서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실적 악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실시했다. 아울러 입증 책임을 언론으로부터 소송 당사자로 이전시켰다. 즉 설리반 사건 이전에는 진실입증 책임이 피소자인 언론에 있었으나 이후부터는 소송 제기자가 이를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한 것이다. 공직자가 명예훼손(이후에는 프라이버시 침해까지 확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소송 제기자가 언론의 보도가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보도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기는 대단히 까다롭다. 왜냐하면 이는 언론인의 보도 당시 마음의 상태(state of mind)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직자는 이 사건 이후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부터 구제를 받기가 대단히 어렵게 됐다.

10년 뒤인 1974년 연방대법원은 소위 거츠 사건(Gertz v. Welch, 418 U.S.



1960년 3월 29일자 뉴욕타임즈가 몽고메리(Montgomery)시 시의원이자 경찰국장인 설리번이 당시 대표 민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과 그 추종자들에 대해 테러 협박을 시도했음을 알리는 전면 의견 광고(제목 :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라 [Heed their Rising Voices])를 게재하자, 설리번은 이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출처 : ABA저널, 「March 9, 1964: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Decided」, 2012년 3월 1일자)

323)에서 현실적 악의 원칙을 공직자 외에도 공인(public figure)에 까지 확대 적용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공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으나 이후 판례를 통해서 볼 때 공인은 공직자를 포함하여 공적인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 인사들과 공중의 시선을 끌고자 노력하거나 미디어에 등장하여 널리 알려진 유명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공인이 누구이고 어느 정도 범주의 사람들을 포함하는가에 대해서는 현재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설리반 사건과 거츠 사건으로 인해 언론의 자유는 공인의 기본권에 비해 우월한 권리로서 인정되어 왔다.

물론 공인이라고 모든 형태의 보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1971년 둔 앤 브래드스트리트 대 그린모스 빌더스 (Dun & Bradstreet, Inc. v. Greenmoss Builders)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사적 관심사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의 경우, 수정헌법 제1조가 명시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받진 못하기에 비록 공인의 경우에도 사적 관심사에 대해서 보도할 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아울러 연방대법원은 공인의 경우에 현실적 악의가 입증된다면 일반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이 병행되어 내려질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현실적 악의 원칙은 그 일괄적 적용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1964년 이후 지속적이고 고집스럽게 지켜지고 있다. 사생활 보도가 문제가 된 때에도 비록 그 정보의 공개가 ‘불쾌감을 일으키도록 부정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하지만 사생활 보도의 목적이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속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에 대해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인은 역시 언론의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연방대법원은 공인의 경우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일반인만큼 기대할 수 없다고 피력한 바 있다.

결국 트리에르바일레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거나 또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언론을 상대로 소송했다면 전술한 바와 같이 공인으로서 승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금번 트리에르바일레 사건은 명예훼손 사건이었지만 실제로는 공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더 가깝다고 보여진다. 명예훼손이든 프라이버시 침해이든 프랑스에서는 미국처럼 언론자유를 우월적인 권리에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인의 사생활 보도, 프랑스가 미국과 다른 이유

이처럼 프랑스의 법적 구조가 미국과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프랑스 언론이 역사적으로 국가적 개입을 많이 받아 온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예들 들어 정부는 언론에 대한 사전 검열이나 보증금 제도, 그리고 간접세 등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법제도를 통해서 언론을 규제해 왔다. 비록 프랑스 인권선언 제정에 따라서 언론은 상당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나, 언론의 개인에 대한 부주의하고 선정적인 명예훼손 기사와 과도한 반정부 기사의 남발로 많은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이와 아울러 프랑스 대혁명 이후, 언론이 진실되고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동시에 개인적 명예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언론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됐다. 그래서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본적인 시민권으로 ‘반론권’을 수용하게 됐다. 이러한 반

론권 규정을 포함한 세계 최초의 언론규제 법안이 1800년에 의회에 제출됐다. 동 법안은 ① 언론의 과도한 권력 남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② 불공정하고 편견적인 보도로부터 독자들을 보호하고, ③ 공중의 권력과 언론의 권력을 균형 지우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④ 형사적 문제해결과는 다른 피해 구제책을 설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언론사가 반론의 의무를 어겼을 경우 언론사의 폐간을 명하는 등 중벌을 가하도록 한 규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의회에서 채택되지 못했다가 1822년에 와서 통과된다.

프랑스법에 따르면 명예훼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문제된 언론사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사의 내용에 특정인의 신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개인의 명예나 지역에서의 명성에 반하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 또한 형사재판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실의 보도에 있어 ‘악의’(bad faith)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문제된 명예훼손적 표현을 분석해서 추론할 수 있다. 이 때 만일 사실 보도가 ‘진실’이라면 언론이 면책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제소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다면 이는 예외가 된다.

형사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이는 민사재판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

도 가능하다.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민법상의 조항 적용을 받게 된다. 민법상의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언론사가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기사의 정확성에 대해 조사하려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과실로 인정된다. 개인간의 민사소송에서보다 언론이 피소인으로 등장하는 경우 배상액이 높은 경향이 있다.

프라이버시에 관한 프랑스 법 구조

프랑스 법은 제소자가 공인이나 아니냐의 여부가 판결에 크게 작용하지 않다는 점에서 미국의 경우와 차이를 보인다. 물론 프랑스의 경우에도 관련 사안이 공적인 것으로 상당한 공적 관심사의 내용이라면 면책의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공인 여부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공인의 프라이버시 관련 보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진실여부가 면책사유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보다도 더 승소할 가능성이 클 수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를 주로 불법행위로 간주하는 미국과 달리 프랑스 법은 민사 및 형사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 프라이버시가 무엇인가에 대해 프랑스 법원은 아직 명확히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지만 개인의 ‘사적 영역’의 모든 부분이 프라이버시로 인정되고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는 개인의 가족에 대한

일(사건)뿐만 아니라 외부로 알려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개인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예를 들어 재정관련 정보나 개인의 가족, 연인관계나 성생활 등). 이러한 점에서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의 사진을 재생산(게재)하는 것은 제소인의 공인여부와 상관없이 프라이버시 침해가 된다. 그래서 프랑스 언론이 사진에서 주변의 구경꾼(방관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얼굴을 가리는 일이 종종 생기기도 한다.

프랑스에서의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는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 한 사람이 잡지의 취재에 동의하고 기사에서 그(그녀)의 사생활의 일부를 공개하였다면(예를 들어 아이들, 결혼 생활, 연애 사실 등), 다른 잡지는 만일 취재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가족과 관련된 사실을 해당 잡지에 실지 못한다.

물론 프랑스의 경우에도 미국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개인이 만일 공인이라면 개인의 사생활의 범위는 상당히 축소된다. 그러나 개인의 가정생활(family life)은 대단히 사적인 영역으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받게 된다. 위에서 제시한 트리에르바일레 사건 이외에도, 2007년 모나코의 알버트 왕자에 대한 프랑스 대법원의 판결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프랑스 대법원은 모나코 알버트 왕자

가 한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들춰 보도록 한 잡지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명한 항소심 법원의 결정을 확정했다. 프랑스 대법원은 잡지사의 알버트 왕자에 대한 보도가 공적인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공중의 관심사에 속하는 것도 아니며 뉴스 가치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하자면 프랑스에 있어서는 대단히 사적인 정보는 보도하지 못하는 법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프랑스의 경우에는 언론인들이 몰래카메라를 사용해서 인터뷰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재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이 자제되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제제를 가할 조항이 없다. 또 몰래카메라를 이용하거나 녹음한 내용을 방송하는 것 또한 민법과 형법에 규정된 프라이버시 보호조항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단지 문제가 된 대화의

Monaco prince admits love child

Prince Albert II of Monaco has acknowledged that he has had an illegitimate child with a flight attendant from Togo, his lawyer said.



Prince Albert of Monaco has a reputation as a playboy prince

Lawyer Thierry Lacoste said in a statement that the prince, who is not married and has no heir, wanted to face up to his responsibilities.

He said the child, aged 22 months, would not be in line to the throne and would not have the name Grimaldi.

The prince, 47, said he hoped his son could avoid the media spotlight.

Prince Albert's father, Rainier III, died in April aged 81.

Rumours of the prince having a child with former Air France flight attendant Nicole Coste, who is Togolese and holds French citizenship, emerged in some parts of the French media days after Prince Rainier's death.

Ms Coste was quoted as saying she met the prince on a flight in 1997, leading to a relationship and the birth of the boy, Alexandre, in August 2003.

Constitution

In the lawyer's statement, released as the Grimaldi family ends three months of mourning, the prince said he regretted the fact that the press had gone public with the story so close to his father's funeral.

"Prince Albert II asks the press to adopt responsible behaviour, similar to what it has adopted in similar circumstances for other public figures, and to respect his private life and that of the underage child," the statement added.

Prince Albert, often dubbed the "playboy prince", has for years appeared reluctant to get married or start a family, which perhaps prompted his father to change Monaco's constitution in 2002.

Previously, the principality would have become part of France in the absence of a male heir. Rainier had the law changed so that, in the event of Albert remaining childless, Princesses Caroline and Stephanie could follow their brother, who was proclaimed regent during Rainier's last days.

The sisters have seven children between them.

Paris Match의 숨겨둔 아들 보도를 사실로 인정하면서 'playboy prince'라는 비난을 받은 모나코 알버트 왕자 (출처: BBC, 'Monaco prince admits love child', 2005년 7월 6일자)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공인의 사생활 보도에 대한 프랑스와 미국의 법적 관점

결론적으로 트리에르바일레 여사 사건은 미국의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관련법의 시각으로 보면 상당한 괴리가 느껴진다. 미국에 있어 공인들이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구제를 받기 까다롭게 만듦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여타 다른 기본권에 앞서는 우월적인 권리로서 판단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제소자의 공인 여부와 상관없이 진실하고 공적 관심사의 경우에만 한하여 언론을 면책시켜 주는 구조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문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만일 이것이 개인의 사적 영역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를 보도한 언론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개인 인격권의 비교형량을 꺾고 있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공히 헌법을 통해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이나 범주는 양국이 서로 차이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어느 법체계가 기본권 간의 갈등을 더 적절히 해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디어 빅뱅 시대에 한 국가

의 중요한 보도는 단지 그 나라만의 뉴스나 보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개인적 기본권의 정도는 각국 법체계의 영역 내에서만 보호를 받게 된다. 개인의 사생활이 대단히 자유분방한 프랑스의 경우에는 공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가 상당히 보호를 받게 되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공인들은 항상 언론에 노출될 정도의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

아울러 트리에르바일레 여사가 비록 프랑스에서 잡지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이는 다소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판단된다. 공인이라고 해서 그 가족이나 이력이 모두 보도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도 공인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제도적인 측면이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도를 자제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도 공인 여부를 법리에 크게 적용시키지 않고 있으나 공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적절하게 인용함으로써 언론에 위축효과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하겠다. 사회가 변하면서 법도 변화하게 되므로 만일 제2, 제3의 트리에르바일레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프랑스의 경우에도 점차 공인이 언론을 상대로 피해구제를 얻어내기가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